

파주시의회위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74
----------	-----

발의년월일 : 1998년 4월 30일

발 의 자 : 장석천의원 외 3인

☐ 제안이유

- 종전의 국내여비 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이 폐지되고 공무원여비 규정(대통령령 15180, '98. 2. 24)으로 통합 개정 공포
- 파주시의회위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국내여비중 숙박료의 지급단가를 조정함(별표 1)

파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 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

국내여비 지급단가표(제4조 제2항 관련)

지급기준액	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	일비	숙박료	식비
구분	운임	운임	운임	운임	(1일)	(1야당)	(1일당)
의장·부의장	1등급	2등급 정액	정액	정액	10,000	41,000	25,000
의원	2등급	2등급 정액	정액	정액	10,000	22,000	18,000

비 고 : 1. 파주시의회 소재지 내에서의 여행(국 내에서의 여행을 말한다)
이나 여행거리 12km미만인 경우에는 일비와 식비만을 지급하
여야 한다.

2. 철도운임 구분표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 2등급은 새마을호
보통실을 가리키며, 당해 철도운임 구분표를 적용할수 없을때
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
다.

신구조문대비표

(단위 : 원)

현									개 정 안									
(별표 1)									(별표 1)									
지급기준액			천 도 운 입	신 마 운 입	항 공 운 입	자 동 치 운 입	일 비 (1인)	숙박료 (1야당)	식 비 (1일당)									
구 분																		
의 장 · 부의 장			1등급	2등급 정 액	정 액	정 액	10,000	41,000	25,000	의 장 · 부의 장			현행	현행	10,000	41,000	현행	(1일당)
의			2등급	2등급 정 액	정 액	정 액	10,000	19,500	18,000	의			현행	현행	10,000	22,000	현행	(1일당)

된다.

③심의회회의 회의는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심의회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5·7·1)

제2장 조례와 규칙

제11조 (조례와 규칙의 공포절차) ①조례와 규칙의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와 규칙의 공포문 전문에는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뜻을 기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명기한다. 이 경우 조례공포문 전문에는 지방의회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법 제19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문 전문에는 지방의회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법 제19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지방의회회의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명기한다.

제12조 (조례와 규칙의 공포방법등)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의 게재로써 한다. 다만, 법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 <개정 95·7·1>

②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의 공고 또는 고시에 관하여는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준용하되, 법 제1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의 고시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5·7·1>

제13조 (공포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와 규칙의 공포일과 공고·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등을 게재한 공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제14조 (운영규정)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조례와 규칙의 공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장 지방의회

제15조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①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4, 회의수당(원격지회의출석비를 포함한다)의 지급기준은 별표 5, 여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6 및 별표 7에서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한다. <개정 95·12·30>

(후 69)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며, 회의수당은 회기중 지방의회의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다만,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5·12·30>

③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원격지회의출석비는 회의당일 출·퇴근이 곤란한 원격지 또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제 2 항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인 도서지역(연륙지역을 제외한다)으로서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되, 회기중 지방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신설 95·12·30>

(전문개정 95·7·1)

제15조의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손해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①법 제32조의2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벌의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제 2 호 또는 제 3 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 1 호 또는 제 2 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 1 호 또는 제 2 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 2 호 또는 제 3 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95·7·1>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시·도의회의원 회의수당의 2년분 상당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 시·도의회의원 회의수당의 1년분 상당액
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치료비 전액. 다만, 제 2 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②법 제32조의2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로 인한 상해·사망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보상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③제 2 항의 보상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도의 경우에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해 지방의회의원 1인
2.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 1인
3. 의무직 공무원 1인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

④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⑤보상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추 69)

[별표 5] <개정 95.12.30>

지방의회의원 회의수당 지급범위(제15조관련)

구 분	회의수당 지급범위	원격지회의출석비 지급범위
시·도의회의원	일 60,000원 이내	별표 6의 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지급범위에 의한 교통운임(현지교통비를 제외한다)·숙박비 및 식비(3분의 1) 범위 이내
시·군·자치구의회의원	일 50,000원 이내	

[별표 6] <개정 94.7.6>

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지급범위(제15조관련)

(단위 : 원)

구 분	지 급 기준액	철 도 운 임	선 박 운 임	항·공 운 일	자동차 운 일	현 지 교통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 비 (1일당)
시·도	의장· 부의장	1등급	2등정액	정 액	정 액	6,500	20,700	11,000
	의 원	1등급	2등정액	정 액	정 액	6,500	20,700	11,000
시·군· 자치 구	의장· 부의장	1등급	2등정액	정 액	정 액	6,500	20,700	11,000
	의 원	2등급	2등정액	정 액	정 액	6,500	16,200	10,500

비 고 : 1. 의회소재지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동일 특별시·직할시·시 또는 군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을 말한다)이나 출석 및 여행거리가 12km미만인 경우에는 현지 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철도운임구분표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 2등급은 새마을호 보통실을 가리키며, 당해 철도운임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3. 국내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지급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 영이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후 69)

[별표 7] <개정 94.7.6>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지급별위(제15조관련)

(단위 : 미불화)

지 급 기준액 구 분		항 공 임 일	비 숙 박 비 식 비	준 비 금				
				15일 미만	15일이상·30일이상 30일미만	30일이상		
시·도	의장· 부의장	1등정액	30	147	133	150	180	210
	의 원	1등정액	25	130	107	140	170	195
시·군 ·자치 구	의장· 부의장	1등정액	25	130	107	140	170	195
	의 원	2등정액	20	114	81	130	155	180

비 고 : 1. 여행지역의 거리 및 현지물가등을 감안하여 여비지급 범위안에서 달리
정하여야 한다.

2. 국외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지급별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
에는 이 영이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국외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별표 8] <개정 94.12.31>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상임위원회 설치기준(제20조의2관련)

구 분	설치가능한 상임위원회 (운영위원회포함)의 수
의원정수 41인이상	5개이내
의원정수 31인이상 40이하	4개이내
의원정수 13인이상 30이하	3개이내

비 고 : 시와 군을 통합하여 설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의회에 있어서는 당해
도농복합형태의 시가 설치된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의하여 새로운 시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위 표에 의한 상임위원회외에 농
어촌지역발전을 위한 상임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후 62)